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공동사업장이 상대방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함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
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
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
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
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
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830, 2023.03.21

질 의

-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공
동사업자의 지분을 승계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이월된 조
세특례제한법 29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
제액에 대한 당해연도 공제방법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
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
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
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
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
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
입니다.

3.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
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
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2.에 따라
계산한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
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
는 것입니다.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
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서면법규재산-2745, 2022.10.06

질 의

- '17.3월 질의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개시함

*질의자는 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음

- '24.3월 새로운 임차인과 2년 계약기간의 임대차계
약 체결할 예정
- '25.3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⑤에 따
른 자동말소 예

질의

-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5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임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하
여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기준법무부가-212, 2023.03.08

질 의

- 납세자가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발전사업자가 실제 전력의 공급없이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 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3.8.

[질의내용]

질의. 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 중 실제 전력의 공급과 관계없이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제2안> 미운전발전기의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서면국제세원-1853, 2023.03.17

질 의

-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회 신

1.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국적의 행정직원이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한?미 조세조약」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국외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현지 공관장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